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한시적규제유예등민생경제
활력제고를위한33개법령의
일부개정에관한대통령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한덕수 (교육부 등 16개 기관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투자·창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며, 중소기업과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민생 분야의 행정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선제적으로 행정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33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3종 가스시설공사 분야의 업무내용 확대(안 제1조)

가스·난방공사업종의 제3종 가스시설공사 분야의 업무내용을 공사에 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공사로 한정하고 있으나, 공사에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공사로 확대함으로써 소규모 가스시설공사업의 규제를 완화함.

나.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교육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담 완화(안 제4조)

공중위생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60만원의 과태료 금액이 부과되고 있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을 20만원으로 낮춤으로써 과태료 부담을 완화함.

다. 국내여행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등 완화(안 제5조)

관광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국내여행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1천500만원 이상에서 해당 금액의 10분의 5를 감액하고,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객실구비요건을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완화함.

라. 국유림 대부료 등 납부기한 완화(안 제6조)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그 납부를 고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국유림 대부료 등의 납부 부담을 경감함.

마.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완화(안 제7조)

일반군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전문군무경력관 및 임기제일반군무원은 20세 이상으로, 그 밖의 일반군무원은 직급에 따라 18세 또는 2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일반군무원의 유형이나 직급에 따른 구분 없이 응시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완화함.

바. 농어촌도로 점용료 감면 비율 확대(안 제9조)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농어촌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하였으나, 2024년 5월 3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는 점용료의 10분의 5를 감액하도록 농어촌도로

점용료 감면 비율을 확대함

사.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행정처분 예외 사유 신설(안 제16조)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행정처분 예외 사유 중 기술능력요건에 관한 일시적 미달 사유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사유로 기술능력요건에 미달한 경우를 행정처분 예외 사유로 신설함.

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 한시적 완화(안 제18조)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을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로 축소함.

자. 폐기물부담금 징수유예 기간 연장(안 제22조)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 기간을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서 9개월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폐기물부담금 납부 부담을 경감함.

차. 가족인 수급자의 활동지원급여 수행 사유 일시적 확대(안 제25조)

수급자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인 경우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이 지급되는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나, 2024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는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함.

카. 1종 향만배후단지의 우선입주 기업 기준 완화(안 제31조)

1종 항만배후단지에 우선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입주기업체 선정 공고일 직전 1년 동안의 수출액이 해당 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국내복귀기업으로서 국내복귀 이전 1년 동안의 총매출액에서 국내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의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자로 한정하였으나, 수출유망 제조업이나 국내복귀기업의 입주 확대를 위해 수출유망 제조업의 총매출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거나 국내복귀기업의 매출액 비중이 100분의 40 이상인 자로 기준을 완화함.

타.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에 대한 감경기준 마련(안 제33조)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처분 시 별도의 감경기준을 규정하지 않았으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이면서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을 지체 없이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지급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감경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제재처분의 부담을 경감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교육부 및 국방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법령별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4. 26. ~ 5. 9.),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1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하목 2)의 업무내용란 중 “1천만원”을 “1천5백만원”으로 한다.

제2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납부할 점용료·사용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년도 점용료·사용료+[전년도 점용료·사용료 ×{10/100+(증가율-10/100)×3/20}]
전년도 점용료·사용료+[전년도 점용료·사용료 ×{115/1000+(증가율-20/100)×1/20}]
전년도 점용료·사용료+[전년도 점용료·사용료 ×{13/100+(증가율-50/100)×3/100}]
전년도 점용료·사용료+[전년도 점용료·사용료 ×{145/1000+(증가율-100/100)×3/200}]
전년도 점용료·사용료+[전년도 점용료·사용료 ×{16/100+(증가율-200/100)×1/200}]
전년도 점용료·사용료+[전년도 점용료·사용료 ×{175/1000+(증가율-500/100)×5/2,000}]

제3조(「공인노무사법 시행령」의 개정)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연수교육기간을 6개월로 한다.

제4조(「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과목의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60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20)

제5조(「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1) 중 “1천500만원 이상일 것”을 “1천500만원 이상일 것. 다만,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는 금액의 10분의 5를 감액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1) 단서 중 “2018년 6월 30일까지”를 “2018년 6월 30일까지 또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2조제2호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법 제15

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기간을 적용한다.

제6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6항 전단 중 “60일”을 “60일(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대부료등의 납부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120일)”로 한다.

제7조(「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의 개정)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를 “18세 이상이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의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가목 중 “보험대리점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를 “보험대리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투자권유대행인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를 “투자권유대행인”으로 한다.

제9조(「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의 개정)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3항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24년 5월 3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는 점용료의 10분의 5를 감액한다.

제10조(「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중 “받은 후 2년 이상”을 “받고,”로 한다.

제11조(「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관리하는 댐
별표 7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0조제1항제3호의 댐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은 해당 댐의 출연
금을 대상으로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12조(「도로교통법 시행령」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를 “부과를 면제할 수 있고, 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는 부담금 총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조(「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의 개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산업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소 정보활용지원센터의 운영을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하고, 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도서관법 시행령」의 개정)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에 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명 이상 둘 것”을 “1명 이상 둘 것. 다만, 인구감소지역에서 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등록 신청을 한 국공립 작은도서관은 2개의 작은도서관에 사서를 공동으로 1명을 두는 경우에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로 한다.

-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이라 한다)에서 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등록 신청을 한 국공립 공공도서관 및 국공립 어린이도서관등은 1), 2)에도 불구하고 사서를 1명 이상 두는 경우에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15조(「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7일”을 “30일”로 한다.

제16조(「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그 심의할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은 예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지정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이 점유한 구역과 보호구역을 명시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 도면(이하 “문화유산구역등 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제11조제4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종류, 명칭, 소재지, 지정가치 등 심의 내용
2. 국가지정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이 점유한 구역과 보호구역을 명시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제14조제3항 중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예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유산구역등 도면을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제14조제3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내용 및 이유
2. 제11조제4항제2호에 따른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제14조제6항 중 “그 취지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내용 및 이유
2. 문화유산구역등 도면

제14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날에 문화유산구역등 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하며,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가 있는 날에 문화유산구역등 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6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문화유산구역등 도면

제21조제1항 전단 중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7조(「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별표 7에 따른 기술능력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여 등록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18조(「방송법 시행령」의 개정)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2제1항 중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를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9조(「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023학년도 및 2024학년도”를 “2025학년도 및 2026학년도”로 한다.

제20조(「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2호나목 중 “등에 필요한”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으로, “갖추어야 한다”를 “갖출 수 있다”로 한다.

제21조(「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다목·폐목 및 허목의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란 중 “20센티미터 이하”를 각각 “20센티미터 이하. 다만, 2024년 0월 00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는 17센티미터 이하로 한다”로 한다.

제22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1항 중 “6개월”을 “9개월”로 한다.

제23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의 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24년, 2025년도에 발생한 부담금에 한정하여 6기로 균등 분할하여 낼 수 있고, 이 경우 제1기분은 1월 31일까지, 제2기분은 3월 31일까지, 제3기분은 5월 31일까지, 제4기분은 7월 31일까지, 제5기분은 9월 30일까지, 제6기분은 11월 30일까지 각각 내야 한다.

제24조(「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가목(7)의 설치기준란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아목(2)의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6

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은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영유아용 거치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25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급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중증 발달 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인 경우. 다만, 2024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만 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다.

제26조(「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가목의 기술인력란 중 “서로 다른 분야의 2명 이상”을 “1명 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전공 분야에서 2년 이상 컨설팅 실무경력이 있는 자 중 1명 이상	경영 전략기획 생산관리 인력관리 안전관리
--	------------------------------------

별표 4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문기술인력 중 나목 및 다목의 전공분야 기술인력은 비상근으로 근무할 수 있다.

제27조(「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의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외국인이 관광 편의 등을 위해 본인의 직접 결제에만 사용하는 경우로서 여권 등을 제시하고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본인 확인 후 발행하는 경우 : 100만원

제28조(「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한다.

제29조(「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의 개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3항 중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100 미만인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내
2.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인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내

3.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인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

제30조(「항로표지법 시행령」의 개정)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의 등록기준란 중 “3억원”을 “2억원”으로 한다.

제31조(「항만법 시행령」의 개정)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 및 제2항 중 “100분의 50”을 각각 “100분의 40”으로 한다.

제32조(「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의 개정)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울산구역의 교통안전특정해역의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북위 35도24분37초, 동경 129도27분52초를 중심으로 반지름 6.0 마일의 원호, 울산항 항계선과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해역

1. 북위 35도20분30초, 동경 129도22분32초
2. 북위 35도23분21초, 동경 129도22분32초
3. 북위 35도28분11초, 동경 129도25분22초
4. 북위 35도28분31초, 동경 129도26분14초
5. 북위 35도29분27초, 동경 129도26분51초
6. 북위 35도29분53초, 동경 129도26분52초

제33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16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조금 지급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2.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을 지체 없이 원상회복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아목(2)의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의 설치를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연수교육) ① 법 제5조의 2제1항에 따른 공인노무사의 연 수교육은 6개월 이상 1년 이내 로 한다. <u><단서 신설></u>	제16조(연수교육) ① ----- ----- ----- ----- ----- 다만, 2025년 1월 1일부 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연 수교육기간을 6개월로 한다.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2조(사업계획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 법 제3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제32조(사업계획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2011년 7월 1일 이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단서 신설>	2. ----- ----- ----- ----- <u>. 다만,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기간을 적용한다.</u>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대부료등) ① ~ ⑤ (생략) ⑥대부료등의 납부기한은 그 납부를 고지한 날부터 <u>60일</u>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신규로 대부등을 받아 처음 납부하는 대부료등은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대부료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u>60일(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대부료등의 납부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120일)</u> -----. ----- ----- -----.

신·구조문대비표

– 2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8조(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요건) ①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제28조(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요건) ①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이 경우 교육과정과 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2. ----- ----- ----- ---. ----- ----- -----.
가. 「보험업법」 제84조 및 제8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보험설계사와 개인인 <u>보험대리점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u>	가. ----- ----- ----- ---- <u>보험대리점</u>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한 <u>투자권유대행인</u>	나. ----- ----- ----- ---- <u>투자권유대행인</u>

<u>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u> <u>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u> 다. (생 략) ② · ③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점용료의 감면) ① 삭제	제11조의2(점용료의 감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19조의2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한다. <단서 신설>	5. ----- ----- ----- . 다만, 2024년 5월 3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는 점용료의 10분의 5를 감액한다.
6. · 7. (생 략)	6. · 7. (현행과 같음)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의2(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자)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중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은 후 2년 이상 농촌융복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8조의2(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자) ----- ----- ----- ----- ----- 받고, ----- -----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0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댐을 말한다. 1.·2. (생략) <u><신설></u> ② ~ ④ (생략)	제40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 등) ① ----- ----- ----- -----. 1.·2. (현행과 같음) <u>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관리하는 댐</u>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 28 –

② · ③ (생략)	<u>부담금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u> ② · ③ (현행과 같음)
------------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4조(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운영) ①·② (생략) <u><신설></u>	제54조(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 산업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운영 을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기관 에 위탁하고, 그 운영에 소요되 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 원할 수 있다.</u>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발견신고) ① 법 제17조에 따른 발견신고는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날부터 <u>7일</u> 이내에 방문 또는 전화 등의 연락수단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제17조(발견신고) ① ----- ----- ----- <u>30일</u>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 ③ (생략)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u>그 심의할 내용을</u>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u><후단 신설></u>	④ ----- ----- ----- ----- ----- <u>다음 각 호의 사항</u> ----- ----- <u>. 이 경우</u> <u>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u> <u>은 예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지정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이 점유한 구역과 보호구역을 명시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 도면(이하 “문화유산구역등 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u>

<신 설>

<신 설>

⑤·⑥ (생 략)

제14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①·② (생 략)

③ 문화재청장은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내
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
여야 한다. <후단 신설>

<신 설>

<신 설>

다.

1.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종류, 명
칭, 소재지, 지정가치 등 심의
내용

2. 국가지정문화유산(동산에 속
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이
점유한 구역과 보호구역을 명
시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⑤·⑥ (현행과 같음)

제14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다음
각 호의 사항-----
----- . 이 경우 특별자치시
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
수·구청장은 예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문화유산구역등 도면
을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1.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
정내용 및 이유

2. 제11조제4항제2호에 따른 지

④ · ⑤ (생략)

⑥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을 결정한 경우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물 · 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신설>

<신설>

제16조(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문화재청장은 법 제28조 및 제31조제5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형도면 또는 지적도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

1.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내용 및 이유

2. 문화유산구역등 도면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날에 문화유산구역등 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6조(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후단
신설>

1. ~ 5. (생략)

<신설>

제21조(허가절차) ①법 제3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
려는 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
의 종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시

-----. 이 경
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
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
역을 포함하며,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가 있는
날에 문화유산구역등 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
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
에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6. 문화유산구역등 도면

제21조(허가절차) ① -----

시장·군수·구청장-----

-----.

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 도지사에게 허가신청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② (생 략)	----- ----- -----. ② (현행과 같음)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일시적인 등록요건 미달) 법 제49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자본금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2. (생략) <u><신설></u>	제26조의2(일시적인 등록요건 미달) ----- ----- ----- ----- -----. 1. · 2. (현행과 같음) <u>3. 별표 7에 따른 기술능력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여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u>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2조의2(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 ① 법 제69조제10항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청취자 참여 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20(<u>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u> 는 100분의 5로 한다)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제52조의2(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 ① -- ----- ----- ----- ----- <u>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에 그 인원내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u>2023학년도 및 2024학년도</u> 입학전형에 대한 입학정원을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2. (생략)		제6조(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① (현재와 같음) ② ----- ----- ----- ----- ----- ----- ----- ----- ----- . ---- <u>2025학년도 및 2026학년도</u>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의3(폐기물부담금의 징수 유예·분할납부의 기한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u>6개월</u>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 분할납부 기한과 분할납부 금액은 환경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제14조의3(폐기물부담금의 징수 유예·분할납부의 기한 및 절차 등) ① ----- ----- ----- <u>9개월</u> ----- ----- ----- -----.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8조(부담금의 분할 납부) ① (생략)	제38조(부담금의 분할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을 연간 4기로 균등 분할하여 내되, 제1기분은 1월 31일까지, 제2기분은 4월 30일까지, 제3기분은 7월 31일까지, 제4기분은 10월 31일까지 각각 내야 한다. <u><단서 신설></u>	② ----- ----- ----- ----- ----- ----- ----- ----- ----- 다만, 2024년, 2025년도에 발생한 부담금에 한정하여 6기로 균등 분할하여 낼 수 있고, 이 경우 제1기분은 1월 31일까지, 제2기분은 3월 31일까지, 제3기분은 5월 31일까지, 제4기분은 7월 31일까지, 제5기분은 9월 30일까지, 제6기분은 11월 30일까지 각각 내야 한다.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급자가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3. (생략) <u><신설></u>	제21조(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수급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종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인 경우. 다만, 2024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만 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다.</u>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이용한도 등) ①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자화폐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200만원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이용한도 등) ① ----- ----- ----- -----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u><신설></u>	3. <u>외국인이 관광 편의 등을 위해 본인의 직접 결제에만 사용하는 경우로서 여권 등을 제시하고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본인 확인 후 발행하는 경우 : 100만원</u>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2(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① ~ ④ (생략)	제19조의2(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⑤ ----- ----- ----- <u>. 다만, 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한다.</u>
⑥ · ⑦ (생략)	⑥ · ⑦ (현행과 같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타당성 검토 등) ①·② (생략) ③ 공사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47조의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타당성 검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100 미만인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내 2.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인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내 3.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인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1조(우선입주) ① 법 제70조제2호에 따라 우선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입주기업체 선정 공고일 직전 1년 동안의 수출액이 해당 기간 총 매출액의 <u>100분의 50</u> 이상인 자로 한다.	제71조(우선입주) ① ----- ----- ----- ----- ----- <u>100분의 40</u> ----- -----.
② 법 제70조제3호에 따라 우선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법 제6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으로서 국내복귀 이전 1년 동안의 총매출액에서 국내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의 비중이 <u>100분의 50</u> 이상인 자로 한다.	② ----- ----- ----- ----- ----- ----- <u>100</u> <u>분의 40</u>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의16(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생략) <u><신설></u>	제9조의16(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조금 지급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2.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을 지체 없이 원상회복한 경우